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

사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1. 2010고단25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 최수은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최명규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2(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)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압수된 위조수표 14매(증제1호)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4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각 무죄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